

# 물가·코로나 ‘후폭풍’에…감기약 사재기 ‘열풍’

내달 공급이 인상에 코로나·독감 겪으면서 시민들 “미리 사두자”  
광주 약국에 발길 물리며 품귀 현상…일부 품절 속 제한 판매도

광주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유명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통·소염·해열제 ‘타이레놀’과 감기약 ‘테라플루’ 등이 일부 약국에서 품절되면서 판매 수량까지 조절하는 약국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타이레놀의 공급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부족 현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 조짐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1일 광주지역 약국 10곳을 돌아본 결과 2곳은 ‘타이레놀’과 ‘테라플루’가 품절된 상태였고, 3곳은 재고조절을 위해 손님 1명당 감기약을 1개씩만 판매하고 있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진은주(여·32) 약사는 타이레놀을 구매하려는 손님 한 명당 한 개씩만 판매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과 테라플루와 같은 약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 이어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일부 약품의 공급이 인상 소식까지 겹치면서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진씨의 설명이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의약품 원료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오는 3월부터 공급가격을 18%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인상의 후폭풍이 의약품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18%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할 수 없어 미리 사두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난 가을부터 유행하고 있는 독감 전염의 공포가 퍼지면서 ‘타이레놀’처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종합감기약 ‘테라플루’까지 사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52) 약사는 “이틀 전 입고된 테라플루가 당일 품절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약국에서 필요한 만큼 주문했지만, 지금은 본사에서 물량을 분배해주고 있어 약국에 재고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광고효과 때문인지(소비자들이)타이레놀과 테라플루 같은 유명한 약만 찾는 상황이고, 오래전부터 가끔씩 약국에 들려 1개만 사갔던 손님들도 2-3개씩 사가려고 한다”고 했다.

동일한 성분에 같은 효능의 약을 권장해도 소비자들은 유명 제품만을 고집하고 있어 약사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강모(47) 약사는 “최근 재고물량 확보를 위해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강씨는 “타이레놀의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해열진통제를 찾는 하루 20여명의 손님 모두가 ‘타이레놀’만 요구한다”면서 “타이레놀이나 테라플루가 재고가 없어 하나씩만 판다고 써붙이면 손님이



광주시 동구 충장동 한 약국에 1일 감기약 재고 관리를 위해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민현기 기자 hyunki@

끊길까봐 막상 손님이 오면 하나씩만 판다고 일일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맘카페나 SNS에는 “OO약국, 테라플루 입고됐습니다”, “타이레놀 미리 사뒀어야 할까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일부 약국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타이레놀 재고 있습니다”, “테라플루 입고됐습니다” 등의 재고 여부를 알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품절사태를 우려한 의약품

사재기현상이 심해 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테라플루를 사기 위해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약국을 찾은 유창호(35)씨는 “품절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혹시 내 가족이 약이 필요할 때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왔다”면서 “약을 구매했으니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광주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 인

상이 결정된다 해도 바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고, 얼마나 수요가 증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값 인상에 따른 공급 책임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광주지역 약국들은 품귀현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판매를 하지 않고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설 명절 친모 살해...자연사 위장한 아들

무안경찰, 50대 구속

설 명절에 친모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신고를 한 아들이 구속됐다.  
무안경찰은 설 연휴기간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경찰에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구타 흔적 등을 발견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증거물을 확보하고 타살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무안의 한 자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2일 늦은 밤부터 23일 오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금은방 유리창 깨고 귀금속 훔친 10대들

광양경찰, 4명 붙잡아

새벽시간 광양에서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1일 새벽 2시 30분경 광양시 중마동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 일당은 공구를 이용해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금반지 등 6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첫 범행 이후 40여 분 뒤 중마동의 금은방을 동일한 수법으로 침입했으나, 주인이 귀금속을 모두 금고에 보관해 절도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군과 B(15)군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나머지 C(17)·D(17)군은 인근에서 망을 본 것을 확인했다. A군은 범행 4시간여 만에 집에서 체포됐지만, 나머지 범인들은 도망쳤다. C·D군이 타고 달아난 차량을 수배한 경찰

은 범행 12시간 만인 오후 1시 50분경 광주시 동림 IC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B군의 친구를 통해 B군의 자수를 권고했고, 이날 오후 5시 30분경 타지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던 B군을 검거했다.

C·D군이 타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 20대와 동승자 10대 등 총 3명에 대해 경찰은 A군 일당이 훔친 귀금속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점을 토대로 범인은닉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시간에 광주 동구 충장로의 금은방에서 15초만에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 3명에 대해 1일 징역 1년~3년형을 구형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삼각대 미설치 교통사고 2차 피해자도 과실 책임

법원, 사고 유발자 책임 50%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 2차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장애가 남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후속 교통사고가 예상됨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지난 2018년 2월 5일 30대 건설 노동자 A씨는 회사 출장차 차를 몰고 영광으로 가던중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했다.

A씨는 차량 앞쪽에서 파손 부위를 사진 촬영하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다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 B씨는 A씨 차량 파편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 옹벽과 A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A씨측에 3억 8000만원 을 지급한후 2차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 824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1억 30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고당시 도로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도.

재판부는 “노면이 얼어붙어 발생한 선행사고 영향으로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A씨는 선행사고후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시를 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지도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운전자인 피고 B씨는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 40km(빙판길에선 최고속도의 2분의 1로 운행)를 초과한 60km~70km로 운행하다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은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도로의 구조와 당시의 날씨가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했음은 분명하다”면서 “피고 측이 지급했던 보험금액, A·B씨의 과실 비율, 손해배상 채권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